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0

2026. 2. 2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12. 김형곤 의원 등 5인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3.)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형곤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사무국장의 직급 및 개방형 직위 지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직급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2조제1항)

나. 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 관련 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

다.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없음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서용)

가. 규칙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사무국장의 직급 및 개방형직위 지정 관련 사항과 전문위원 직급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2025년 11월 28일 규칙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소하고자 **김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임.

나. 검토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임.

○ 본 규칙은 1991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25년 11월 28일 일부개정까지 총 6차례 일부개정 되었음.

연번	발의자	제·개정 주요내용	제·개정일
제정	확인안됨	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규정	1991-03-27
1	확인안됨	의정계, 의사계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개편	2008-01-30
2	확인안됨	전문위원 직급, 사무분장 조정	2010-06-04

3	확인안됨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업무분장 조정	2013-11-15
4	확인안됨	의사팀 업무분장에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을 추가	2014-12-05
5	안지연 의원 등 7명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022-12-23
6	본회의 의결 없이 사무국에서 방침으로 개정	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2025-11-28

○ 지방의회 규칙의 제·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방침에 따라 제정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음.

법제처 의견 제시(2022.07.12. 회신)

질의 요지 :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한 의장방침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요지 :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를 의회규칙의 제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방침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9일,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인 의장의 인사권과 직접 관련되는 「인사규칙」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발령·시행하도록 절차를 안내한 바 있음.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행정안전부)

○ **인사규칙을 심의하는 절차**에서도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규칙을 발령·시행**하여야 함

□ **입안 절차**

규칙안 입안	▷	규칙안 사전검토	▷	심의·의결	▷	발령·시행
임용권자 (의회사무기구)		‣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 ‣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제·개정 조문 검토 (필요시, 전문위원 등 기관 내 전문인력 활용) ‣ 입법예고(생략 가능)		해당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결재 (지방의회 의장)

자료출처 : 행안부,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2024.11.19.

○ 그러나 본 사안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조직과 직위 체계에 관한 규범으로서, 개별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인사규칙」과는 그 법적 성격이 명백히 구별됨.

○ 또한 강남구의회에는 이미 2021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무기구 관련 규칙을 인사규칙의 절차로 갈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안은 인사권 행사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규칙’ 제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 2025년 11월 28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제2조제2항)를 신설하였음.

○ 사무국장의 직위 성격(일반직 4급 ↔ 개방형직위)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및 직제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함.

○ 이는 단순한 내부 운영지침의 변경이 아니라, 의회사무기구의 구조 및 지위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임.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1. **규칙 제정권자인 “지방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
2.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권 침해 소지**

3.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우회한 절차상 하자 발생

○ 따라서 해당 개정은 절차적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개정규칙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상 4급 행정직의 정확한 직명은 ‘지방서기관’이며, 행정·교육행정·사회복지·사서 등의 구분은 5급 ‘지방사무관’부터 적용됨.

  이에 따라 법령상 정확한 직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2조제2항)** 현행 제2조제2항은 2025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그 결과에 따른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금번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안이 통과될 경우 사무국장 개방형직위 지정의 근거는 삭제**되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

2항 삭제를 수정할 경우 개방형직위 지정의 근거는 존치되는 구조임.

- **(안 제3조)**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5급 3명, 6급 이하 2명(직급 간 상호 조정 가능하되 5급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범위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2025년 11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사무국장의 개방형직위 지정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함.

○ 김형곤 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사무국장 개방형직위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670호

제안일자: 2026. 2. 23.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현행 제2조제2항의 사무국장 개방형직위 지정 근거 규정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개정된 바, 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 기존 규정을 존치함으로써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유지(안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지방서기관----------.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직급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조(사무국장) ① ----------지방서기관----------. ② ----------개방형직위----------.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생 략)	제3조(전문위원) ①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형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김형곤·이성수·윤석민·이동호·김진경 의원 (이상 5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사무국장의 직급 및 개방형 직위 지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직급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2조제1항)

나. 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 관련 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

다.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조(사무국장) ① ----------지방서기관----------.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생 략)	제3조(전문위원) 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